

2019년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19. 05.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1. 개 요

- 가. 과업명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시설관리 용역
- 나.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고월길 23(멸종위기종복원센터)
- 다. 목적 : 본 과업지시서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각종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대상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라. 과업기간 : 2019.7.1 ~ 2019.12.31.(6개월)
- 마. 용어의 정의
- 1) "발주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한다.
 - 2) "감독관"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로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 4) "유지관리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배치한 자를 말한다.

2. 과업범위

가.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면 적	2,554,337.00㎡	-
건축 연면적	16,029.44㎡	22개동

- 나.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시설관리 용역업무의 범위는 건물관리와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구축물, 공작물 등과 그와 관련된 일체의 부속 설비(과업지시서상 누락 및 오기된 설비 포함)들에 대한 운전 및 수리·보수·정비·개조·부속품 및 소모품(이하 “소모품” 이라 한다) 교체 등(이하 “유지보수” 라 한다)과 일상점검 업무를 포괄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다. 관계법령에 의한 사항 및 기타 발주자의 협조 사항

라. 건축물현황(각종 시설·설비 현황 ‘별첨1’ 참조)

구분	주요건축물	면적(㎡)	구분	주요건축물	면적(㎡)
본관	① 방문자센터+복원사무실	2,560.70	조류연구시설	⑫ 저어새단독사육장	273.60
	② 식물연구동	1,448.41		⑬ 저어새방사장	221.78
	③ 어류무척추연구동	1,515.51		⑭ 매설외사육장	393.77
	④ 양서파충류연구동	1,478.92		⑮ 검독수리실외사육장	527.24
	⑤ 식물온실	600.75		⑯ 맹금류활강연습장	613.97
	⑥ 곤충온실	291.36	포유류연구시설	⑰ 포유류연구동	1,567.79
지원시설	⑦ 직원숙소	1,097.38		⑱ 사료창고	234.45
	⑨ 검역소	361.80		⑲ 여우실내사육장	374.34
조류연구시설	⑩ 조류연구동	1,558.34		⑳ 시라소니실내사육장	274.35
	⑪ 저어새번식장	213.57		㉑ 우제류실내사육장-1	210.70
	⑫ 저어새단독사육장	273.60		㉒ 우제류실내사육장-2	210.70

3. 과업내용(시설운영·유지관리)

가. 점검

- 1)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의 점검은 상시(일일)점검과 정기(분기)점검으로 구분·실시하며, 주요사항(점검결과, 보수내역, 부품교체내역 등)을 기록·관리한다.
- 2) 운영·유지관리 대상물 운전에 대비하여 1)항과 별도로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운전 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운전

- 1)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의 운전 시에는 사전점검을 토대로 운전시간·조건·방법을 설정하여 본 과업내용 및 시설별 운전지침을 기준으로 운전한다.
- 2)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의 운전시 주변 환경,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부하량 또는 운전방식을 조절하여 에너지절약형 운전을 시행한다.

- 가) 열원의 공급은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균형적 공조운전 시행
- 나) 전력의 누전을 예방하고 절전운전 시행
- 다) 누수·누유·누증 등의 예방으로 에너지 손실 방지
- 라) 기타 시설관리 분야 국가정책 수행 등

다. 보수

- 1)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의 점검 또는 운전 중 이상 발견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보수에 따른 자재 등의 사용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 등은 일일작업일지 등에 기재 한다.
- 3) 자체보수와 외주보수에 대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라. 안전관리

- 1) 유지관리원은 안전교육 내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작업 중 불안정한 작업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3)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 시 주변 근무자에게 작업사실에 대하여 사전 통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측정 및 기록

설비별로 측정·기록·비치하여야 할 내용을 측정·기록하며 감독관의 수시확인 이 용이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바. 보고 및 보고서 목록 등

- 1)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종합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기간 중 유지관리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출 보고서 목록
 - 가) 용역 착수서류 : 용역착수 시점 제출
 - 나) 용역수행계획서(종합관리계획서) :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 제출
 - 다) 유지관리원 이력서 등 : 용역착수 시점 제출
 - 라) 정기보고서(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
- 3) 계약상대자는 본사(외부기관 포함)에서 매월 마지막 근무일에 직원을 파견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현장 확인 및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일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가)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관리현황 및 계획
- 나) 인원배치 현황 및 계획, 점검기록 등
- 다) 발주자 요청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문제점 및 건의 사항
-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보고서 등 : 발주자 요청 시

5)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발주자에 우선 통보하고 긴급 조치 후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조속히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장애사항 발생 시
- 나) 시설파손, 손괴, 망실 등 사고 시
- 다)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시
- 라) 유지관리원의 근무 이상사항 발생 시 등

6)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상황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근무지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사. 준공 후 업무 인계인수

신축중인 건물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운전 및 준공에 참여하고, 준공 후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 감리회사와 업무 협조하여 각종 장비 취급설명서, 시설 설계 도면, 장비 운영지침서 등 아래서류를 인계받아 시설운영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준공 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서류의 부분 또는 사본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준공도
- 주요기기 완성도
- 주요기기 취급 설명서
- 주요기기 시험적성표
- 시공도
- 현장시험 성적표
- 관공청 검사 기록서
- 설비(변경)지시서
- 주요 기계 메이커 목록
- 시공업자 명부
- 설계변경/시공변경사항 검토 및 조치기록부
- 공사용 설계도서(시공, 제작도 포함) 검토관련서류 일체
-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매물부위) 및 공사측량결과 확인자료

4. 유지관리인원

가. 유지관리원의 구성

- 1) 유지관리원은 총 9명이며 계약상대자는 별표 2의 자격요건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2)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등 관련법규에 의한 해당시설의 법정 선임 인력이 필요한 경우 법정자격 선임요건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 선임케 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원의 배치

-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원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는다.
- 2)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을 다음과 같이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가) 비교대근무자는 소장 1인, 분야별책임자(전기) 1인, 기사 4인으로 배치한다.

나) 교대근무자는 기계 1인, 전기 1인, 통신 1인 이며, 이들의 근무형태는 주간/야간/비번 순으로 근무를 한다.

※ 유지관리원의 배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원은 소장의 지시하에 유지관리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원 상호간에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원의 근무시간

- 1) 계약상대자는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을 완전한 상태로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인원(교대근무)을 연중무휴 24시간 배치·근무시켜야 하며,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12:00~13:00은 휴게시간)으로 한다.

나) 교대근무자의 주간근무 시간은 09:00~18:00(12:00~13:00은 휴게시간)이며, 야간근무 시간은 당일 18:00 ~ 익일 09:00(19:00~20:00, 02:00~06:00은 휴게시간)까지로 한다.

- 2) 발주자는 계약업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주문상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3) 계약상대자는 휴일 및 야간작업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유지관리원의 근무 변경

시 감독관에게 근무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인원관리

-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생명, 건강, 신원, 재정보증, 위생, 풍기, 근로시간, 배치 및 변경,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한 책임은 물론 근로기준법,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갖는다.
- 2)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대체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설비 또는 장비의 손실 및 동력원 공급의 이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4) 유지관리원에 대해 다음 각 사항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가)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 나)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자
 -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 및 휴가로 인한 휴무자
 - 라) 기타 경조사항 등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마. 유지관리원의 준수사항

- 1) 유지관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 2) 유지관리원은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의 운영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와 우리 원 시설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과 규칙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 3) 유지관리원은 지정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 또는 신분증을 패용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1) 천재지변 또는 화재·재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조치, 응급처리, 피난유도, 구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 작업은 발주 및 입주기관의 고유 업무에 지장 없도록 수행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5.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안전 및 보안대책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용역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은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을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채용하고, 유지관리원의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등에 응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원은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점검 및 작업 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 시 발주자의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설이 주요 시설임을 감안하여 직원의 신분과 보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행정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붙임 1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나. 과업지시의 해석

-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등과 용역계약서 상 계약상대자의 업무에 대한 이견 발생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결정한다.
- 2) 과업지시서상의 누락 및 오기에 의한 이견 발생 시 그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다.
- 3) 관련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용역비 지급 및 정산

- 1)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월 용역 완료보고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검사가 이루어진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임금지급시 유지관리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을 초과한 노무비를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지급받는 용역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유지관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시에 유지관리원의 임금명세서, 임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용역비는 유지관리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노무비와 피복, 업무용 PC, 프린터, 복리후생비 및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고, 인건비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등 일체를 포함한다

4) 용역수행 시 지급된 용역비가 산정 상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내·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시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된 후라도 발주자의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정산하여 전액 환불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5)호를 미이행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7) 5)호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도 상계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세당국이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 수수료 등 기타의 제세공과금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역비 청구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 완료(기성) 검사원

나) 용역이행 확인서류 : 본 과업지시서에서 언급된 각종 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 결과물

다) 세금계산서

라) 기타 증빙서류

10)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에 대하여 손·망실, 훼손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리 또한 배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당시의 거래실제가격으로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11)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유지관리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의 지정

1) 발주자는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감독관을 지정하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에 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2)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을 감독함에 있어 진행사항 또는 필요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고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가)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소모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라) 시설물의 장애 복구에 관한 사항

마)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감독관의 요청에 의한 사항

마. 용역수행 조직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유지관리원의 변동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용역수행에 지장(법정 자격 선임자는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조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요청 또는 유지관리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력 교체 수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그에 대한 발생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3)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의 출·퇴근기록부를 기록 유지하고, 유지관리원의 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본 용역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설운영업무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업무담당자를 선임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의무

-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유지관리기술 적용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품질 및 서비스 정도 평가, 감독 등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관련서류 열람 및 제출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발주자에게 건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에 대한 안전 및 보안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시행하고 교육대장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자질향상, 기술능력이 있는 유지관리원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6)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제반 시설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시설물의 철거, 이설 또는 파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시설변경 및 신설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 8) 긴급 장애의 발생으로 점검 보수 및 긴급 조치를 취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0) 발주자가 시행하는 시설공사 이외의 경미한 시설개량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업무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격자를 총괄책임자(소장) 및 분야별 책임자로 선임하고, 총괄책임자는 계약상대자를 대리한다.

12) 본 용역에 대한 일괄 하도급 또는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 수감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원(기술자) 관리

- 1)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반법규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와 기능이 우수한 기술자를 채용·선임케 하여 관계법에 저촉이 없어야 하고, 제반 법정검사 수검에 대하여 합격을 하여야 하며, 관계법에 저촉 및 불합격 시에는 이에 대한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법규의 제정·개정 및 변동 등으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의 의무화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선임케 하여야 하며, 기술자격 대여 및 이중 취업자가 없어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교육훈련 세부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가) 교육분야 : 기본소양교육, 해당분야 직무 교육, 보안교육, 안전교육, 기타 발주자가 지정하는 교육
 - 나) 교육주기 : 각 교육과정별 연 1회 이상 필요 시
 - 다) 상기교육과 관련된 교육비 전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법정교육 및 기타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교육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의 업무능력 향상, 안전관리 및 보안의식 고취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선임된 법정관리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책임한계

발주자는 시설주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운용 및 유지보수 용역사로서 설비 운영상 법적 책임 한계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법정검사 :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검사 중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2) 사고책임 : 점검·정비 불량에 의한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제반 민·형사상의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 계약의 해지(종료) 및 변경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 2)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자의 손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계약상대자 또는 유지관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가)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 나)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 다)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 라) '가. 위반행위의 조치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과업지시서 포함)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계약상대자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5)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 6) 관련법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 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7) 발주자의 사정으로 차기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차기계약 시까지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차. 유지관리원의 교체

유지관리원들의 불화로 싸움이나, 고성 등이 일어날 경우 유지관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요청 시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카. 위반행위의 조치

본 용역을 수행 중인 계약상대자(유지관리원 포함)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거나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2) 시설관리용역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 3)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4) 수행한 용역에 현저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다. 공구류 확보 및 소모품의 공급

-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산출내역서 [붙임] 구비장비(공구)를 용역 계약 체결 후 즉시 확보하고, 목록 이외에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구류 및 소모품은 발주자가 부담하여 공급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의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구비장비(공구) 목록이외 공구류 및 소모품 필요 시 즉시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운영·유지관리 대상물의 유지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지 않아 시설 및 장비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1)하단에 의거 발주자가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매 지급한 공구류 및 소모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 4)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공구류 및 소모품의 보유 현황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파. 각종 행위의 지원 및 이행

-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점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때 본 용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준비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 2) 유지관리원의 사무실 및 대기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사무용 가구 및 비품, 점검과 유지보수용 장비, 공구 및 자재 배치 등 사무실 사용 계획은 용역착수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3) 냉·난방, 상·하수도, 전력 및 통신 등의 사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 4)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자 복지증진

-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유지관리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 3)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기타 관련법에 준한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산재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 근무활동의 편리 및 통일된 복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인에게 근무복과 작업화를 지정하여 공급하되, 사전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동복, 하복, 및 방한복 각 1착 이상, 작업화 1착 이상)
- 5)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의 법정 휴가(년·월차 포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원에 대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거. 문서의 비치 등

-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가) 시설 점검 및 관리일지
 - 나) 장비사용 및 운전일지
 - 다) 인원투입, 작업일보
 - 라) 자재, 물품관련 대장
 - 마) 장비 사용현황 및 이력카드
 - 바) 자재, 물품관련 대장
 - 사) 인원편제 및 현황, 유지관리원 신상기록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 아)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 2) 본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문서 및 도면 일체는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계약만료시 조치

- 가.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이나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나.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자에게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계인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기타

- 가. 본 과업지시서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완 할 수 있다.
- 나.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인건비, 인쇄비, 시내 출장비, 보험료, 현장사무실 운영비 및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각종 보험료 등의 일체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다. **(고용 승계)**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붙임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라. **(고용 유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
- 마. **(임금명세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매달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야간교대근로자는 감시, 단속적근로자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 유지관리원 정규직 전환시 본 계약은 전환일 기준으로 계약해지 가능하다.
- 아. 퇴직 적립금은 계약기간이 6개월로 1년 미만이기에 단가에 계산치가 형성치 않아 적립되지 않는다.

【붙임 1】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요 시설·설비 현황

1. 방문자센터+복원사무실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 설비	급탕보일러	목재펠릿보일러(1대)	기계실	
	히트펌프냉·난방기 (EHP)	실내기(27대), 실외기(6대), 전열교환기(8대)	해당실	
	펌프류	급수(5세트), 우수(1세트), 배수 (6대), 급탕(4대)	기계실	
	탱크류	시수탱크(2대), 급탕탱크(1대), 중수탱크(1대), 우수탱크(1대), 밀폐형팽창탱크(2대)	기계실	
	송풍기	기계실(5대), 전기실 급배기팬(2대), 주방 급배기팬(2대), 화장실 배기팬 등(14대)	기계실외	
	공기조화기	배기탈취필터유닛(1대)	지하기계실	
	전기라디에이터	벽걸이 전기라디에이터(5대)	화장실	
전기 설비	특고압반	각종 배전반	전기실	
	변압기반	동력(1대), 전등/전열(1대), 예비(1대) 3상 1,000KVA * 3대	전기실	
	저압반	일반동력 및 전등/전열, 비상동력 저압반	전기실	
	발전기	3상, 500KW(1대)	발전기실	
	MCC반	소화부하, 일반 및 비상동력	기계실	
	분전반	일반 및 비상동력	각층 EPS실	
통신	통합배선설비	VOICE+DATA IDF(3개), WORKGROUP S/W HUB(4대)	1층, 2층 TPS실	
	CATV설비	TV증폭기함(3개)	1층, 2층 TPS실	
	방송설비	방송 단자함(3개), 스피커(39개)	각실, 옥외	
	출입통제설비	ACU(1대), ACCESSARY(3개)	방문자1층TPS실, 전기실, 기계실, 행정실	
	CCTV설비	옥내 카메라(9개), 옥외(5개)	복원사무실 및 방문자센터	
	A/V설비	A/V시스템	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소방 설비	옥내소화전펌프	주펌프*1대, 예비펌프*1대, 보조펌프*1대	1층기계실	
	소화전	옥내 9면	지하1~2층	
	청정소화약제	82.5L/52Kg (14병)	전기, 발전기 실	
	소화기	분말(26개), 청정(8개), 자동확산(4개)	지하1~2층	

2. 식물연구시설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 설비	지열용 히트펌프 냉·난 방기	FCU(24대), 지열히터펌프(2대)	해당실	
	히트펌프냉·난방기 (EHP)	실내기(3대), 실외기(1대), 전열교환기(4대)	방재센터 외	
	펌프류	급수(1세트), 우수(1세트), 배수(6대), 냉온수순환 (3대), 지열순환(3대) 펌프	지하기계실외	
	탱크류	시수탱크(1대), 냉·난방용 밀폐식 팽창탱크(1대), 지열용 밀폐식 팽창탱크(1대),	지하기계실	
	송풍기	기계실(2대), 우수중계시설관리층(2대), MDF실 등(11대)	기계실외	
	배기탈취유닛	우수중계시설 관리층 배기탈취필터유닛(1대)	지붕층	
	전기온수기	각형 급탕용 전기온수기(6대)	화장실	
전기	MCC반	일반, 비상 동력	기계실	
	분전반	일반 및 비상 동력, 전등/전열	각층 EPS실	
	전력, 조명제어	전력제어 및 조명제어시스템	방재반실	
통신	교환기	디지털 교환기 1식	MDF실	
	통합배선설비	VOICE+DATA IDF(2개), WORKGROUP S/W HUB(3대)	1층, 2층 TPS실	
	CATV설비	HAED-END SYSTEM(1식), TV증폭기함(2개), ANT수신설비 (1식)	1층, 2층 TPS실	
	방송설비	방송 단자함(2개), 옥내스피커(27개), 옥외스피커(14개), 전관방송(1식)	각실, 옥외	
	출입통제설비	ACU(1대), ACCESSARY(2개), 출입통제시스템(1식)	1층TPS실, 기계실, 방재실	
	CCTV설비	옥내 카메라(6개), 옥외(5개)	각실	
	자동제어설비	전력, 냉난방, 조명,	방재실, 각동	
	주차관제설비	1식	경비실	
	SI 및 FMS	1식	방재실	
	옥내소화전펌프	주펌프*1대, 예비펌프*1대, 보조펌프*1대	1층기계실	
소방	소화전	옥내 9면	지하1~2층	
	소화기	분말(20개), 청정(2개)	지하1~2층	
	수신기	512회로 스마트형 1대	1층방재실	

3. 어류무척추연구시설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지열용 히트펌프 냉·난방기	FCU(30대), 지열히트펌프(3대)	해당실	
	히트펌프 냉·난방기 (EHP)	전열교환기(3대)	증식실 외	
	펌프류	급수(1세트), 배수(4대), 냉온수순환(4대), 지열순환(4대) 펌프	지하기계실	
	탱크류	시수탱크(1대), 냉난방용 밀폐식 팽창탱크(1대), 지열용 밀폐식 팽창탱크(1대),	지하기계실	
	송풍기	기계실(2대), 문서고, 창고, 탕비실, 화장실 등(6대)	기계실 외	
	전기온수기	각형 급탕용 전기온수기(8대)	화장실, 실험실	
	온실 FOG 시스템	FOG 유닛(1대), FOG 본체(1대), 정제원수 펌프(2대)	화장실, 실험실	
전기	MCC반	일반, 비상 동력	기계실	
	분전반	일반 및 비상 동력, 전등/전열	각층 EPS실	
통신	통합배선설비	VOICE+DATA IDF(1개), WORKGROUP S/W HUB(1대)	2층 TPS실	
	CATV설비	TV 증폭기함(1개)	2층 TPS실	
	방송설비	방송 단자함(2개), 스피커(24개), 옥외(1개) 전관방송(1식)	각실, 옥외, TPS실	
	출입통제설비	ACU(1대), ACCESSARY(1개)	TPS실, 기계실	
	CCTV설비	옥내 카메라(6개), 옥외(2개)	옥내, 옥외	
소방	소화전	옥내 4면	1층~2층	
	소화기	분말(21개)	1층~2층	

4. 양서파충류연구시설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지열용 히트펌프 냉·난방기	FCU(49대)	해당실	
	히트펌프 냉·난방기 (EHP)	전열교환기(4대)	연구실 외	
	펌프류	PIT 배수용 배수펌프(2대)	PIT	
	송풍기	화장실용(2대), 먹이저장실용(2대), 문서고용(2대), T.P.S.용(2대)	화장실 외	
	전기온수기	각형 급탕용 전기온수기(10대)	화장실	
전기	MCC반	일반, 비상 동력	기계실	
	분전반	일반 및 비상 동력, 전등/전열	각층 EPS실	
통신	통합배선설비	VOICE+DATA IDF(1개), WORKGROUP S/W HUB(1대)	1층 TPS실	
	CATV설비	TV 증폭기함(1개)	1층 TPS실	
	방송설비	방송 단자함(1개), 스피커(35개)	각실, 옥외, TPS실	
	CCTV설비	옥내 카메라(3개)	옥내, 옥외	
소방	소화전	옥내 4면	1층~2층	
	소화기	분말(16개)	1층~2층	

5. 식물온실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지열용 히트펌프 냉·난방기	FCU(3대)	해당실	
	펌프류	PIT 배수용 배수펌프(2대)	PIT	
	공기조화기	외기조화기(1대)	기계실	
	송풍기	기계실(5대), 온실(5대)	해당실	
	온실 FOG 시스템	FOG 유닛(1대), FOG 본체(1대), 정제원수 펌프(2대)	기계실	
전기	분전반	비상 동력, 전등/전열	식물온실	
통신	자동제어설비	휠제어	온실	
소방	소화전	옥내 1면		
	소화기	분말(1개)		

6. 곤충온실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지열용 히트펌프 냉·난방기	FCU(12대)	온실	
	송풍기	온실강제배기(2대), 공기순환용(2대)	온실	
	온실FOG 시스템	FOG본체(1대), 정제원수펌프(1대)	기계실	
전기	분전반	비상 동력, 전등/전열	곤충온실	
통신	자동제어	헬제어	온실	
소방	소화전	옥내 1면		
	소화기	분말(2개)		

7. 직원숙소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온수보일러	진공온수보일러(1대)	지하기계실	
	히트펌프냉·난방기(EHP)	실내기(17대), 실외기(1대), 전열교환기(17대)	해당실	
	펌프류	급수(1세트), PIT(2대), 순환(6대), 배수(2대)	지하기계실	
	송풍기	기계실 급배기(2대), 화장실 등(21대)	지하기계실등	
전기	MCC반	일반, 비상 동력	기계실	
	분전반	일반 및 비상 동력, 전등/전열	각층 EPS실	
통신	통합배선설비	VOICE+DATA IDF(2개) WORKGROUP S/W HUB(2대)	1,2층 TPS실	
	CATV설비	TV증폭기함(2개)	1,2층 TPS실	
	방송설비	방송 단자함(2개), 옥내스피커(28개), 옥외(3개) 전관방송(1식)	각실, 옥외, TPS실	
	출입통제설비	ACU(1대), ACCESSARY(1개)	TPS실, 기계실	
	CCTV설비	옥외(2개)	옥내, 옥외	
소방	단독발신기셋트	6대	1층,2층	
	소화기	분말(26개),자동확산(2개)	1층,2층	

8. 검역소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펌프류	PIT배수용(1대),오·배수용(1대)	PIT	
	송풍기	동물사배기(1대),화장실,사료창고(6)	화장실 외	
	전기온수기	각형 급탕용 전기온수기(1대)	화장실	
	전기라디에이터	화장실,준비실(1)	화장실	
	배기탈취유니트	배기탈취용(1대)	해당실	
	수평형외기조화기	수평형(1)	사료창고	
전기	분전반	비상 동력, 전등/전열	준비실	
통신	통합배선설비	VOICE+DATA IDF(1개)	1층 준비실	
	CATV설비	TV증폭기함(1개)	1층 준비실	
	방송설비	방송 단자함(1개), 옥내스피커(3개)	각실, 옥외, TPS실	
소방	소화기	분말(4개).	1층	

9. 조류연구시설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지열용 히트펌프 냉·난방기	FCU(26대),지열히트펌프(1대)	해당실	
	히트펌프냉·난방기(EHP)	실내기(4대), 실외기(1대), 전열교환기(6대)	해당실	
	펌프류	급수(1세트),지열순환(2대),냉온수순환(2대),배수(7대),냉온수대류(2대)	기계실	
	탱크류	시수탱크(1대),버퍼탱크(1대),밀폐형팽창탱크(2대),	기계실	
	송풍기	기계실,부전기실(2대), MDF실(2대),화장실배기팬 등(12대)	기계실외	
	공기조화기	배기탈취필터유니트(2대)	지붕층 외	
	전기온수기	각형 급탕용(7대)	화장실	
전기설비	특고압반	각층 배전반	전기실	
	변압기반	동력(1대), 전등/전열(1대), 예비(1대) 3상 750KVA * 3대	전기실	
	저압반	일반동력 및 전등/전열, 비상동력 저압반	전기실	
	발전기	3상, 500KW(1대)	발전기실	
	MCC반	소화부하, 일반 및 비상동력	기계실	
	분전반	일반 및 비상동력	각층 EPS실	
통신	교환기	디지털 교환기 1식	MDF실	
	통합배선설비	VOICE+DATA IDF(3개) WORKGROUP S/W HUB(3대)	1층,2층 TPS실	
	CATV설비	TV증폭기함(3개)	1층,2층 TPS실	
	방송설비	방송 단자함(3개), 옥내스피커(36개) 옥외스피커(1개), 전관방송(1식)	각실, 옥외 행동모니터링실	

소방 설비	출입통제설비	ACU(1대), ACESSARY(5개)	1층TPS실 MDF실 외	
	CCTV설비	옥내 카메라(10개), 옥외(5개)	각실, 옥외	
	옥외소화전펌프	주펌프*1대,예비펌프*1대,보조펌프*1대	1층기계실	
	단독발신기세트	6대	1층.2층	
	소화기	분말(21개).청정(6개)자동확산(3개)	1층.2층	

10. 저어새변식장(2개동)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 설비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창고	
통신				
소방	소화기	분말(1개).		

11. 저어새단독사육장(3개동)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 설비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방풍실	
통신				
소방	소화기	분말(1개).		

12. 저어새방사장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 설비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방풍실	
통신	CCTV설비	통신RACK(1개), 카메라 4대		
소방	소화기	분말(4개).		

13. 매실외사육장(3개동)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 설비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방풍실	
통신	CCTV설비	통신RACK(1개), 카메라 6대		
소방	소화기	분말(1개).		

14. 검독수리실외사육장(2개동)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 설비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방풍실	
통신	CCTV설비	통신RACK(1개), 카메라 6대		
소방	소화기	분말(1개).		

15. 맹금류활강연습장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 설비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방풍실	
통신	CCTV설비	통신RACK(1개), 카메라 1대		
소방	소화기	분말(2개).		

16. 포유류연구시설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 설비	지열용 히트펌프 냉·난방기	FCU(22대),지열히트펌프(1대)	해당실	
	히트펌프냉·난방기(EHP)	전열교환기(4대)	해당실	
	펌프류	급수(1세트),지열순환(2대),냉온수순환(2대),배수(4대),냉온수대류(2대)	기계실	
	탱크류	시수탱크(1대),버퍼탱크(1대),밀폐형팽창탱크(2대),	기계실	
	송풍기	기계실(2대),전기실(2대),화장실 등(10대)	기계실외	
	공기조화기	공기조화기	기계실	
	전기온수기	각형 급탕용(11대)	화장실	

전기	저압반	일반, 비상 전등, 동력	저압전기실	
	MCC반	일반, 비상 동력	기계실	
	분전반	일반 및 비상 동력, 전등/전열	각층 EPS실	
통신	통합배선설비	VOICE+DATA IDF(3개) WORKGROUP S/W HUB(3대)	1층, 2층 TPS실	
	CATV설비	TV증폭기함(3개)	1층, 2층 TPS실	
	방송설비	방송 단자함(3개), 옥내스피커(42개) 옥외스피커(2개), 전광방송(1식)	각실, 옥외 행동모니터링실	
	출입통제설비	ACU(1대), ACCESSARY(3개)	1층TPS실 MDF실 외	
	CCTV설비	옥내 카메라(5개), 옥외(4개)	각실, 옥외	
소방	단독발신기세트	4대	1층, 2층	
	소화기	분말(14개), 청정(9개) 자동확산(1개)	1층, 2층	

17. 사료창고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펌프류	급수(1세트)	기계실	
	탱크류	시수탱크(1대)	기계실	
	송풍기	기계실(2대)	기계실	
	정수처리장치	마이크로필터(1대), 카본필터(1대), U.V Sterizer(1대), Control Panel(1대)	기계실	
	정수처리장치	마이크로필터(1대), 카본필터(1대), U.V Sterizer(1대), Control Panel(1대)	기계실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사료창고	
통신				
소방	소화기	분말(3개).		

18. 여우실내사육장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펌프류	급수(1세트), 공동구 배수(4대)	펌프실, 공동 구	
	탱크류	시수탱크(1대)	펌프실	
	송풍기	펌프실 급배기(4대), 배기용(3대)	펌프실	
	정수처리장치	마이크로필터(1대), 카본필터(1대), U.V Sterizer(1대), Control Panel(1대)	펌프실	
	공기조화기	여우실내사육장1(1대), 여우실내사육장2(1대)	펌프실, 먹이 창고	
	배기탈취유니트	여우실내사육장1(1대), 여우실내사육장2(1대)	펌프실, 전실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먹이창고	
통신	CCTV설비	옥내(9개), 옥외(4개)		
소방	소화기	분말(5개).		

19. 시라소니실내사육장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송풍기	배기용(2대)	먹이창고	
	공기조화기	수평형(1대)	먹이창고	
	배기탈취유니트	배기탈취용(1대)	먹이창고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먹이창고	
통신	CCTV설비	옥내(5개), 옥외(8개)		
소방	소화기	분말(2개).		

20. 우제류실내사육장-1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펌프류	배수용(1대)	PIT	
	송풍기	배기용(2대)	사료창고	
	공기조화기	수평형(1대)	실내사육장7	
	배기탈취유니트	배기탈취용(1대)	사료창고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사료창고	
통신	CCTV설비	옥내(14개), 옥외(4개)		
소방	소화기	분말(1개).		

21 우제류실내사육장-2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펌프류	배수용(1대)	PIT	
	송풍기	배기용(2대)	사료창고	
	공기조화기	수평형(1대)	실내사육장7	
	배기탈취유니트	배기탈취용(1대)	사료창고	
전기	분전반	일반 동력, 전등/전열	사료창고	
통신	CCTV설비	옥내(14개), 옥외(18개)		
소방	소화기	분말(1개).		

22. 옥외 시설물

구분	주요장비 및 시스템	내용	위치	비고
기계설비	다인방역시스템	대인살균시스템(2SET),차량살균시스템(2SET)	검역소, 매사육장 주변	
전기설비	다인방역시스템	다인방역시스템 2개소	검역소, 매사육장 주변	
	송원정	예비 전원 1개소	검역소 주변	
	심정펌프	심정펌프 2개소	사료창고, 여우사육장 주변	
	MCCB함	MCCB 2P 50/30AT * 22소	우제류, 여우사육장 주변	
	조경 제어반	사슴연못 A, B * 2개소	우제류사육장 주변	
통신	옥외기반시설	간선 관로, 간선케이블 1식		
소방설비				

23. 위험물시설

시설명	설치위치	위험물		
		류별	품명	수량
경유탱크	직원숙소 옥외	제4류 제2석유류	경유	7,000ℓ

【붙임 2】

시설관리 법정인력 및 근무인원

1.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분야	선임대상	선임자격증	인원	관련법규	비고
전기	전기안전관리자	o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	1인	전기사업법 제7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의무
	전기안전관리보조원	o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소지자 또는 5년이상 실무 경력자	1인		필요시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o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경력5년 이상 냉동시설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1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별표3	필요시
	안전 “종사원”	o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 시설안전관리교육이수자	1인		
액화가스	안전관리책임자	o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또는 냉동시설교육이수자 또는 사용시설교육이수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필요시
보일러	관리자	o보일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보일러 산업기사,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또는 보일러취급 기능사	1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7조 제1항(별표 11)	필요시
승강기	승강기운행관리자	o승강기 운행관리자 교육이수자	1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	필요시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	o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필요시

※ 기타 관계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에 의하여 선임기준 및 근거법규가 변동될 수 있으며, 시설현황 변동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음.(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기준 준수)

2. 분야별 자격기준 및 근무인원

구 분	계	건축	조경/ 토목	기계 설비	통신	전기/ 소방	비 고
소 계	9	1	1	3	2	2	
팀장(소장)급	1			1			
분야별책임자	1					1	전기안전관리
주간근무	4	1	1	1	1		설비 유지·보수
교대근무	3			1	1	1	기계제어/방재실

- 주) 1. 투입인력은 법정면허자를 포함한 상기 기재된 내용의 자격, 경력, 인원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 자격이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2. 전기분야 인력 중 소방분야 경험이 있는 자를 각 1인 포함하여 방재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함.
3. 법정면허 선임자가 아닌 분야별 인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배치인력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기술자격 기준	학력 및 경력 기준	비 고
관리소장	- 기사 7년 이상 - 산업기사 9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9년 이상 " 전문대졸 11년 이상 " 고졸 13년 이상	고급기술자 수준
분야별책임자 (전기)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4년 이상 - 기능장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5년 이상 " 전문대졸 7년 이상 " 고졸 9년 이상	중급기술자 수준 이상
운영 및 보수 기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2년 이상 -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이상 " 전문대졸 2년 이상 " 고졸 3년 이상	초급기능사 수준 이상

【붙임 3】

휴 가 일 수

구분	특별휴가		일반휴가		비고
	대 상	일수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1개월 ~ 12월 미만	매월 1일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①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5】

구비장비(공구) 목록

구분	장비(공구)명	수량	단위	규격	비 고
시설	가스검출기	1	EA	XP-702IIZ-A	
시설	총전식 핸드드릴	1	EA	GSB 18-2-LI	
시설	총전식 핸드드릴	1	EA	GSR-14.4-2LI	
시설	함마드릴	1	EA	HR2610(SDS-PLUS타입)	
시설	함마드릴	1	EA	GSB16RE	
시설	함마드릴비트	1	EA	16 x 210mm	
시설	함마드릴비트	1	EA	20 x 210mm	
시설	함마드릴비트	1	EA	22 x 260mm	
시설	핸드그라인더	1	EA	GWS 6-100	
시설	고속절단기	1	EA	NHC-14D	
시설	직소	1	EA	GST75BE	
시설	샌더기	1	EA	GSS230AE	
시설	진공펌프	1	EA	엘로우자켓 11CFM	
시설	콤프레샤	1	EA	KAC-25	
시설	수중펌프	2	EA	TSP400 (1HP)	
시설	Plier(뿔지)	3	EA	D213-9NLER	
시설	롱노우즈	3	EA	T-306E	
시설	니퍼	3	EA	6 "	
시설	플라이어	2	EA	10 "	
시설	바이스플라이어	2	EA	10 "	
시설	첼라 플라이어	1	EA	12 "	
시설	첼라 플라이어	1	EA	8 "	
시설	핸드리벳타기	1	EA	HR-300	
시설	절단기(철근, 와이어용)	1	EA	14인치(350mm)	
시설	철판가위	1	EA	10"	
시설	스페너	2	EA	14PCS(10mm~32mm)	
시설	몽키스페너	2	EA	12 "	
시설	몽키스페너	2	EA	10 "	
시설	파이프렌치	2	EA	18 "	
시설	파이프렌치	2	EA	14 "	
시설	파이프렌치	2	EA	10 "	
시설	복스렌치	1	EA	KYC (set) 24P	
시설	L렌치	1	EA	inch	
시설	L렌치	1	EA	mm	
시설	헤머망치	2	EA	일반형	
시설	빠루망치	2	EA	일반형	
시설	동망치	2	EA	30MM	
시설	고무망치	2	EA	YGL-66SL	
시설	빠루	1	EA	일반형	
시설	정	2	EA	일반형	
시설	홀펀치	1	EA	8PCS	
시설	홀 펀치	2	EA	12mm	
시설	기어플러(유압식)	1	EA	150mm KDM-6inh	
시설	기어플러발	1	EA	KWT 3F*10"(250mm)	
시설	접지형 작업선	1	EA	전선릴(접지)30M	
시설	접지형 작업선	1	EA	전선릴(접지)50M	
시설	작업등	2	EA	SML-601	

시설	파이프바이스	1	EA	DAE WON, NO2	
시설	바이스	1	EA	YDSV-100mm	
시설	쇠톱대	2	EA	일반형	
시설	구리스건	3	EA	우메타 500cc	
시설	양날 톱(목재용)	1	EA	300mm	
시설	안전안경	2	EA	차광용	
시설	줄자	1	EA	코메론 5M	
시설	광청소기	1	EA	UDT	
시설	스프링청소기	1	EA	UDT UD-60 자동	
시설	안전대	1	EA	SAH1005(벨트+그네)	
시설	용접앞치마	1	EA	일반형	
시설	A형사다리	1	EA	10단	
시설	A형사다리	1	EA	7단	
시설	A형사다리	1	EA	6단	
시설	A형사다리	1	EA	5단	
시설	A형사다리	1	EA	4단	
시설	핸드카	1	EA	소	
시설	핸드카	1	EA	대	
시설	진공청소기	1	EA	HC-1900BL(업소용)	
시설	체인블럭	1	EA	UDT 2/1 TON	
시설	체인블럭	1	EA	UDT 1 TON	
시설	공구함	1	EA	대	
시설	공구함	1	EA	중	
시설	저압 & 고압 검전기	1	EA	TK-8007(AC80-7KV)	
시설	특고압 검전기	1	EA	TK-8030(AC80-30KV)	
시설	특고압용 절연 고무 장화	1	EA	요츠키 YS-112	
시설	특고압용 절연 고무 장갑	1	EA	요츠키 YS-101	
시설	절연저항측정(메가)	1	EA	SH-2000M	
시설	압착기	1	EA	DK-19	
시설	케이블 압착기	1	EA	CK-100	
시설	케이블 커터	1	EA	CC-325	
시설	와이어 스트리퍼	1	EA	1.0mm~3.2mm	
시설	스트리퍼	1	EA	0.5mm~6.0mm	
시설	포켓테스터기	2	EA	3244-60	
시설	후크메타	1	EA	3288-20	
시설	스냅링플라이어	1	EA	—	
시설	전기 임팩트	1	EA	GDS18E-500W 1/2"	
시설	비접촉식 검전기	3	EA	플루크FLK-1AC-A1-2-5PK	
시설	누설전류계	1	EA	MULTI-140	
시설	접지저항계	1	EA	교리스4200(후크온식)	
시설	열화상카메라	1	EA	플리어TG165	
시설	절연저항테스터기	1	EA	SH-1000M	
시설	한신 타일절단기	1	EA	HT600N	
	합계				